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

제출년월일 : 2019. 0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소 투철한 애향정신으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군민대상 부문을 추가하여 수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민대상 수상 부문 변경 및 추가

기존의 “지역개발부문”을 “일반지역개발부문”으로 변경하고,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부문”을 추가하여 군민대상 수상범위를 확대(안 제7조의2제2항)

나. 조례 문구 일부 수정

1) 기존 “군인”을 “군민”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2)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 중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를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헌신한 자”로 변경(안 제7조의3 2호)

3)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다”를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3호 서식으로 한다“로 변경(안 제8조제1항)

4) “간사는 서무담당주사가 되고”를 “간사는 서무담당이 되고”로 변경(안 제9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 5. 17. ~ 2019. 6.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기획감사실-6145호, 2019. 5. 16.)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기획감사실-6145호, 2019. 5. 16.)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주민복지과-33754호, 2019. 5. 14.)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군인”을 “군민”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지역개발부문

제7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부문

제7조의3제2호 중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을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서무담당주사가”를 “서무담당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20 년 월 일

평창군수 ○ ○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20 년 월 일

평창군수 ○ ○ ○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상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20 년 월 일

평창군수 ○ ○ ○ (직인)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6)직 업						(7)소 속					
(8)직 급			(9)직 위						(10)대외직명*		
(11)근무기간						(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호수	포상년월일	포상종류	포상기관	피포상자			공적개요	기념품/부상	비 고
				소 속	직위(직명)	성 명			

※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 ---------- 군민------- ---------- --------.---------- ---------- ----------.
제7조의2 (군민대상) ① (생 략)	제7조의2 (군민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수상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문별로 선발 시행한다. 1. 지역개발부문 2. ~ 5. (생 략) <신 설>	②---------- ----------. 1. 일반지역개발부문 2. ~ 5. (현행과 같음) 6.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부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3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생 략)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7조의3 (모범공무원 포상) ---- ---------- ---------- ---------- ---. 1. (현행과 같음) 2. ----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다.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포상절차) ①·② (생 략)	제9조(포상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위원은 자치행정과장·종합민원과장·주민복지과장·산림과장·안전건설과장이 되며, 간사는 서무담당주사가 되고,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 ---------- ---------- ---------- ---------- ---------- -- 서무담당이 ----------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군민(단체포함) 및 소속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상 조치가 불필요하며 비용이 발생치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연락처	(033) 330 - 2210